

ESG 위원회 규정

제정 2021.12.22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ESG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직무와 권한, 기능)

1. 위원회는 본 회사의 E(환경), S(사회), G(거버넌스)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.
2. 위원회는 E(환경), S(사회), G(거버넌스)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, 쟁점사항을 발굴 및 파악하여 회사의 ESG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, 이와 관련된 성과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·승인한다.

제4조(구성)

1.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2.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3. 관련활동 필요시, 타 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

1.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3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 단,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5.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충원된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
제6조(소집권자)

1. 위원회는 연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추가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2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집절차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7조(소집절차)

1.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(결의방법)

1.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3.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부의사항)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ESG 경영 전략 방향 및 계획
2. ESG 성과 및 추진활동
3. E(환경), S(사회), G(거버넌스)영역 관련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관계인의 출석등)

1.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, 외부인사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의사록)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전, 경과요령,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3조(간사)

1.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2. 간사는 CFO와 ESG담당 조직장으로 구성한다.
3.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4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